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2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조 국 · 조인철
김성희 · 허성무 · 김기표
허 영 · 임미애 · 채현일
복기왕 · 김 윤 · 강준현
박희승 · 조계원 · 박해철
김남근 · 김준형 · 황 희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,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.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.

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,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,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

의무사항은 아님.

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·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후단 중 “관할 소방서장”을 “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<u>관할 소방서장</u>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</u>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